응 급 처 치 및 심 폐 소 생 술

※ 2019년 2월 개정사항(교육부) 반영

■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수

교육대상	교원양성과정 이수중인 학부생, 교육대학원생
이수기준	교원양성과정 이수기간 동안 <u>2회 이상 이수</u> *교육대학원생 중 2016년 3월 이전에 수료한 경우 1회 실습 이수 가능(2018년 3월 개정)
이수시기	교원양성과정 이수기간 <u>학년도별 실습 1회</u> 이수

□ 교내교육 운영

교육운영	학기별 3회 교육 실시	
교육신청	교육대상자가 인제정보시스템 〈기타교육신청〉에서 당해 학기 교내교육 직접 신청 ※ 학기초 학기 일정 공지	
교육방법	외부 강의자가 대학 내 교육공간에서 이론(1시간)과 실습(2시간) 강의	
결과확인	인제정보시스템 교직이수자가진단 [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일자] 확인	
기타사항	■ 교원자격검정을 위한 교내교육은 수료증 또는 확인증 발급하지 않음. ■ 부득이한 사유로 교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<u>1회에 한하여</u> 교외교육을 인정함.	

□ 교외교육(개별) 적용 내용

내용	대한적십자사 심폐소생술(4시간) 이수	교원(기간제포함), 산학겸임교사, 강사, 직원이 소속학교(교육청 소속기관 포함)에서 응급처치 교육 이수
절차	인제정보시스템 기타교육신청 ▶ 교외이수(개별)신청 ▶ [서식] 교외이수(개별)신청서 등 교직과정부 제출 ▶ 인제정보시스템 기타교육이수 내역 확인	인제정보시스템 기타교육신청 ▶ 교외이수(개별)신청 ▶ [서식] 교외이수(개별)신청서 등 교직과정부 제출 ▶ 인제정보시스템 기타교육이수 내역 확인
제출 서류	·[서식] 교외이수(개별) 신청서 1부. ·대한적십자사 심폐소생술 이수증 1부.	·[서식] 교외이수(개별) 신청서 1부. ·재직증명서(원본) 1부. ·재직기간 소속학교에서 이수한 교육확인서 1부.

교외교육(개별) 교육일자	인정학기	비고
당해연도 2월 ~ 당해연도 7월	당해학년도 1학기	교육일자에 따른 인정학기로
당해연도 8월 ~ 차기연도 1월	당해학년도 2학기	기간 내 신청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하여야 함

